

제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가능하다.

제 9조(계약 목적)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이용) 하기 위해 계약자와 기관의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0조(계약 기간)

- ①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을 시행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 기일까지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또는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장기요양 대상자의 사망, 요양원 입소 및 병원 입원으로 인한 계약내용의 변경 사항이 생길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을 변경 또는 종료한다.
- ③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 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신 수급자께서는 서비스를 받은 다음 달에 기관에서 발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청구내용대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①재가급여 월한도액

(2023.01.01.기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②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2023.01.01. 기준)

분류(1회당 방문시간)	금액(원)
30분 이상	16,190
60분 이상	23,480
90분 이상	31,650
120분 이상	40,280
150분 이상	46,970
180분 이상	52,880
210분 이상	58,930
240분 이상	65,000

③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2023.01.01. 기준)

구 분	23년 추가
차량이용(차량내)	82,160
차량이용(가정내)	74,070
차량미이용	46,250

④ 본인부담금 비율

1. 일반대상자 : 총급여비용의 15%
2. 의료급여 및 감경대상자 : 감경비율에 따라 총급여비용의 6%, 9% 등
3. 기초수급권자 : 총급여비용의 0%
4. 비급여 서비스는 전액 본인부담 한다.

제12조(기관의 의무)

1. 방문요양 급여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예외)
5.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제공
6. 전 직원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교육 수료
7.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제13조(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합리적인 주장
4.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서비스 변경을 요청할 권리
5. 수급자가 제공받은 서비스 내용에 대한 기록을 열람할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4.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
5.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제14조(계약해제)

① 수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노인장기요양법 제23조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제15조(계약해제 시 쌍방의 의무)

① 수급자는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의사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제 의사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